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기획재정부

목 차

제1장 총칙	1
제2장 수행절차 및 분석방법	2
제1절 수행절차	2
제2절 분석방법	5
제3장 경제성 분석	6
제1절 수요의 추정	6
제1관 수요추정의 방법 및 개발계획 반영기준	6
제2관 교통시설 사업	7
제3관 수자원 및 기타 사업	8
제2절 편익의 추정	9
제1관 편익항목의 식별 및 조정	9
제2관 교통시설 사업	10
제3관 수자원 및 기타 사업	12
제3절 비용의 추정	14
제1관 비용추정의 기본방향 및 비목별 총사업비 산정원칙	14
제2관 교통시설 사업	16
제3관 수자원 및 기타 사업	19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22
제5절 민간투자 연계 가능성 검토	25
제6절 재무성 분석	26
제4장 정책적 분석	27
제5장 지역균형발전 및 기술성 분석	29
제6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31
제7장 행정사항	32
부칙	3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1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분석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역할 및 세부지침 등과의 관계) ①이 지침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교통시설, 문화관광, 수자원, R&D, 정보화, 기타 재정사업 등 각 부문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이하‘세부지침’)의 기본 지침 역할을 한다.

②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기준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각 부문별 세부지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세부지침에 대한 보완 및 수정사항이 반영된 업무가이드라인 및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의 원칙) ①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이하 ‘수행 기관’이라 한다)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은 이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 내용) 예비타당성조사는 향후 사업추진 여부 및 적정 사업시기와 사업규모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대안의 검토,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을 분석한다.

제 2 장 수행절차 및 분석방법

제1절 수행절차

제6조(기본 수행절차)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기본적인 수행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등을 통한 사업의 쟁점 파악
2.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의 적합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요·편익·비용 추정 등을 통한 경제성 분석
3.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 및 사업준비 정도,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고용효과, 사업별 특수평가 등의 평가항목들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하는 정책성 분석
4. 지역 간 불균형 상태의 심화를 방지하고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지역개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지역균형발전 분석, 다만 정보화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기술성 분석으로 대체 가능
5. 계층화 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또는 기술성) 분석의 내용을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는 종합평가
6.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및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제시하는 정책제언

제7조(사업의 개요 분석) ①수행기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면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기본적인 평가자료로 이용한다.

②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개요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주체

3. 사업의 내용

③수행기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관련 문헌 및 현장방문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종합하여 사업의 개요를 파악하고 이를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서의 보완요구) ①수행기관은 동 지침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구체화되지 못하여 조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조사 초기단계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사업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사업계획서의 보완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신속히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예시) 사업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총사업비 규모가 달라지므로 어떤 시설물 혹은 구조물들이 사업내용에 포함되는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예시) 사업의 구체적 입지, 즉 어느 지역 혹은 어느 노선을 통과하는 사업인지를 가능한 범위까지 자세히 명시한다. 막연히 시점과 종점의 이름만 명시한다든가 사업을 추진할 후보도시의 명칭만 나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건축사업의 경우 건물이 입지할 적절한 부지가 선정되어 있어야 한다.

제9조(기초자료의 분석) ①기초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되며 수행기관은 조사 초기단계에 사업지역을 직접 방문하고 그 지역의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후 대상사업의 성격에 따라 분석한 주요 내용을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 관련 자료 : 기상, 지질, 표고, 경사 분석 등 자연환경과 관련된 자료를 말한다.
2. 생활환경 관련 자료 : 수질오염, 토지오염, 공사소음 등 생활환경과 관련된 자료를 말한다.

3. 사회·경제적 환경자료 : 인구구조 및 산업별 취업구조, 지역총생산, 토지이용 현황, 교통시설현황,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등의 자료를 말한다.
4. 기술환경 자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 있어서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술의 개념, 개요, 연구개발 동향 등 사업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②수행기관은 기초자료 분석시 단순히 지역 현황에 대한 정형화된 자료를 나열하기보다는 조사 사업과 관련된 해당 지역의 현황이나 정보시스템 환경 현황 등을 충분히 기술하여야 한다.

(예시) 수목원 사업 수행 시 전국 수목원 현황과 각 수목원별 특색을 조사 함으로써 해당 사업이 갖는 의미와 역할 체계 분담 등 검토

(예시) 풍력발전 사업 수행 시 국내외 관련 분야의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국내외 기술개발 수준을 점검하고 향후 기술개발의 방향 및 시장 점유가능성 등 확인

(예시) 정보화부문 사업 수행 시 정보화 대상 업무, 유관 조직, 정보시스템 및 관련 기술 등의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경제성 분석 및 사업의 필요성 판단 등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

③수행기관은 해당 사업이 국가 차원의 계획방향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체계적으로 검토되었는지 여부, 상위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투자우선순위와 조사대상 사업의 위상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법령 또는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등 상위 및 관련 계획을 분석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의 쟁점검토) 수행기관은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기술적 타당성, 재원 마련 가능성, 지역갈등 등의 중요한 쟁점을 파악한 후 그 해결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예시) 부가가치 추정을 위한 조업실태조사와 입주 수요조사의 원자료 사용 문제

(예시) 세부 편의항목을 구분하여 합산하는 경우 편의의 중복가능성

(예시)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중복성 등

제11조(대안 및 시나리오의 검토) ①수행기관은 필요시 제안된 사업계획 이외의 대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

(예시) 사업규모의 축소, 평면교차와 입체교차 대안 등

② 수행기관은 사업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를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단계에서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 할 수 있다.

(예시) 사업 타당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장래개발계획이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확정되기 어려울 경우, 그 시행여부를 시나리오로 설정

제2절 분석방법

제12조(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 방법) ①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다.

②정보화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 외에 기술성 분석을 포함한다. 다만, 사업의 주요내용이 건설사업인 경우에는 기술성 분석을 수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해당 사업이 특정지역으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사업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주) 사업 유형별 평가 항목

- (건설사업)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기술성 분석(또는 지역균형발전 분석)
- (기타 재정사업)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제 3 장 경제성 분석

제1절 수요의 추정

제1관 수요 추정의 방법 및 개발계획 반영기준

제13조(수요 추정 방법) 수요추정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특별한 수요추정방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문별 세부지침에 따른 수요 추정방법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개발계획의 반영기준) ①수행기관은 사업의 타당성 분석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장래 개발계획의 경우 실현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장래 개발계획의 반영기준은 실시계획 승인에 준하는 단계 이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개발계획의 반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자원 관련 사업의 경우에는 개발계획 반영기준을 개발계획 승인으로 한다.

1. 택지개발계획 - 실시계획 승인 및 이후 단계
2. 산업단지개발계획 -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승인 및 그 이후 단계
3.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 - 조성계획 승인 및 그 이후 단계
4. 기타 개발계획 - 실시계획 승인에 준하는 단계 및 그 이후 단계

③중앙정부 주도로 계획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나 혁신도시, 그리고 도청 이전 등과 같은 계획의 경우 타 개발계획에 비해 실현가능성이 보다 높으므로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 승인 이전 단계라도 시나리오 분석 등을 통해 반영할 수 있으며 그 근거를 보고서에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제2관 교통시설 사업

제15조(도로·철도사업의 수요추정) ①교통수요는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 통행배정 등 4단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교통존(traffic zone)을 기반으로 추정한다.

②교통수요 추정을 위한 기본자료는 국가교통DB와 같이 공신력 있는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사용하고 이를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요구되는 수준 및 내용을 분석할 수 있고 가급적 범용적인 교통계획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소프트웨어의 활용으로 인해 중요사항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석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에 따른 재정사업평가 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등의 논의를 거쳐 다른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재분석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사업 시행 전과 후의 총통행량은 동일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도교 및 연륙교 사업과 같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총통행량에 현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유발되는 교통량을 반영하여 총통행량을 변화시킬 수 있다.

⑤도로 및 철도사업의 수요를 추정함에 있어 주말이나 관광 수요가 현저하게 차이나는 사업지역의 경우 이를 반영하여 교통수요를 추정할 수 있다.

제16조(항만사업의 수요추정) ①항만수요의 추정은 개별 항만별의 기능과 역할에 따른 배후세력권을 설정한 후 세력권 내에서 창출될 수요 중에서 해당 항만에서 처리하게 될 수요를 예측하는 개별 항만별 접근방법(Bottom-up)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컨테이너, 해상 여객 등 배후세력권이 광범위하거나 설정하기 어려운 수요인 경우에는 개별 항만별 접근방법과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②개별 항만수요를 추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경제 지표의 전망치는

기본적으로 정부 또는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공식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공항사업의 수요추정) ① 항공수요의 추정 항목은 연간 여객수요와 연간 화물수요로 구분하며, 항공 여객수요는 특성에 따라 국내선 내륙노선, 국내선 제주노선, 국제선 등으로 구분하여 추정한다.

② 공항부문의 수요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는 국가교통DB와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요예측치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석대상 사업의 기초수요에서 사용된 항공산업의 현황, 항공정책, 장래 경제성장 전망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수요를 재추정하여야 한다.

제3관 수자원 및 기타 사업

제18조(수자원사업의 수요추정) ① 수자원사업의 용수수요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및 환경개선용수 등으로 구분하여 추정한다.

1. 생활용수 : 사업대상지역 내 장래 총인구, 급수보급률, 1인 1일 평균 급수량과 기타용수 수요를 추정하여 산정한다.
2. 공업용수 : 기존공단과 계획공단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가동률과 입주율, 계획 유수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존공단은 과거 사용량 실적을 검토하여 반영하고, 계획공단은 유사 사례의 부지면적 원단위법을 적용하거나 관련 문헌 또는 연구 자료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3. 농업용수 : 논용수, 밭용수만을 고려하며 수요량 추정은 예비타당성 조사의 성격과 자료의 한계를 반영하여 증발산량을 정립된 이론 및 공식을 통해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되, 사업대상지역의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단위용수량을 경지종류별 관개면적 전망치에 곱하여 산정한다.
4. 하천유지용수 : 하천유지유량을 직접 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고시된 하천유지유량을 기준으로 하천유지유량을 추정한다.
5. 환경개선용수 : 수혜대상자에 의해 기 산정된 환경개선용수 수요 자료를 검토한다.

② 용수공급능력의 추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행 한다.

1. 기존 수자원시설물의 공급규모 현황 파악
2. 계획시점 이전까지의 향후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개발계획, 광역 배분 조정에 따른 공급변동 규모 파악
3. 추가 수자원 확보를 위한 신규 댐의 공급규모 산출

제19조(의료시설사업의 수요추정) ① 의료서비스 수요의 지표로 병상수요(요구되는 병상수)를 사용하며, 보완적으로 해당 지역의 보건의료지표를 활용하며, 이때 적용하는 의료진료권은 특정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환자들이 어떤 지역의 의료시설들을 이용하는지를 측정하는 지역친화도 지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의료수요는 입원과 외래환자 각각에 대해 추정하며, 입원 환자수를 통해 요구 병상수를 제시한다.

제20조(문화·관광사업의 수요추정) 문화관광사업의 수요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의 수를 의미하며, 유사시설에서 수요의 추이나 매력도(중력모형 등을 통해 추정)를 고려하여 수요량을 예측한다.

제21조(정보화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요추정) 정보화사업과 국가 연구개발사업은 개별사업의 성격에 따라 산출물과 목표들이 다양하므로, 수행기관의 판단 하에 개별 사업별 편의 추정방법에 따라 필요시 경제성 분석의 대상이 되는 수요를 별도로 추정할 수 있다.

제2절 편의의 추정

제1관 편의 항목의 식별 및 조정

제22조(편의항목의 식별) 수행기관은 편의 추정을 위해 우선 편의항목을 식별하는 작업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편익은 사업의 성격과 유형에 적합하게 선정한다.
- 편익은 사업의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항목을 고려한다.

제23조(편익항목의 조정) ①수행기관은 사업의 특성상 이 지침에서 원칙으로 정하는 편익항목을 제거하거나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편익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편익항목의 조정으로 인해 사업타당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소관부처와 중요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실무조정위원회를 통해 해당 편익의 제거 또는 추가를 결정할 수 있다.

(예시) 사업의 구간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편익이 발생하는 경우, 실무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반영 여부 검토

②수행기관은 편익을 산정함에 있어 영향권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편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은 계량화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편익산정에 반영하지 못하는 편익은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편익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관 교통시설 사업

제24조(도로·철도사업의 편익) 도로 및 철도사업의 편익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통편익이란 모든 도로 및 철도 부문 사업에 포함되는 편익이며, 사업특수편익이란 특정 사업의 평가에 한정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편익이다. 수행기관은 편익을 반영함에 있어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선택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나 편익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공통편익)
- 통행시간 절감편익(공통편익)
- 교통사고 감소편익(공통편익)
- 환경비용(공해 및 소음) 절감편익(공통편익)
- 주차수요 감소로 인한 주차공간 기회비용 절감편익(사업특수편익)
- 공사 중 교통혼잡으로 인한 부(-)의 편익(사업특수편익)

7. 철도사업으로 인한 도로공간 축소에 따른 부(-)의 편익(사업특수편익)
8. 전철화사업에 따른 환경오염비용 절감편익 등(사업특수편익)

제25조(공항사업의 편익) 공항사업의 편익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행기관은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선택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나 편익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운항비용 절감편익
2. 항공기 탑승객 및 화물 통행시간 절감편익
3. 청사 내 여객 및 화물 통행시간 절감편익
4. 전환수요로 인한 편익
5. 초과수요로 인한 편익 등

제26조(항만사업의 편익) 항만사업의 편익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행기관은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선택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나 편익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선박대기비용 절감편익
2. 선박재항비용 절감편익
3. 하역비용 절감편익
4. 내륙운송비용 절감편익
5. 화물운송시간가치 절감편익
6. 환적화물 유치편익
7. 토지조성편익
8. 이용객 지체감소편익
9. 선박 대형화 편익
10. 선박운항비용 절감편익
11. 국제여객 유치효과
12. 외해투기비용 절감편익

제3관 수자원 및 기타 사업

제27조(수자원사업의 편의) 수자원사업의 편의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행기관은 편의를 반영함에 있어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선택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나 편의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생활·공업·농업 용수 공급편의
2. 홍수피해 경감편의
3. 수력발전편의
4. 환경개선용수편의
5. 용수공급 신뢰성 개선 편의
6. 기타편의

제28조(의료시설사업의 편의) 의료시설사업의 편의항목은 사업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행기관은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선택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나 편의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원거리 의료시설 이용시간 절감편의
2. 원거리 의료시설 이용 교통비 절감편의
3. 응급사망 감소편의
4. 대기시간 단축편의 등

제29조(문화사업의 편의 및 추정방법) ①문화·관광시설 사업 등의 편의은 본 시설의 입장수입 및 각종 부대시설의 매출액 등 객단가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주) 객단가: 시설에서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 한 단위에 부과되는 금액으로 입장료, 숙박시설의 숙박요금, 연수프로그램의 연수요금 등 입장수입 및 각종 부대시설의 매출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가격(price)이 아니라 수요자의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에 따라 책정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문화·관광 시설 등의 편의 추정 시 비시장재화 등과 같이 객단가를 통해 표현할 시장가치가 없는 경우 '조건부 가치추정법'을 통하여 추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효과와 편의유형 등을 고려할 때 조건부 가치추정법 적용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한다.

(예시) 해당 시설을 직접 이용함으로써 얻는 재화에 대한 적정한 시장 가치가 존재하지 않거나 역사 유물 보관 및 전승 등과 같은 비사용 가치가 중요한 경우 등

제30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편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편의항목은 사업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행기관은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선택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나, 편의항목이 중복계상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결과를 통한 소비자의 후생 향상 또는 산출물의 시장거래를 통한 신규 부가가치 창출과 관련된 가치창출 편의
2. 개발된 기술의 적용을 통해 특정 분야에서의 소요 비용감소와 관련된 비용저감 편의 등

제31조(정보화사업의 편의 및 추정방법) ① 정보화 부문의 편의은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바를 통해 정하며, 다음 각 호 편의의 범주와 시스템의 성격을 고려하여 적합한 편의항목을 구체화한 후, 이에 대한 화폐가치화를 통해 편의을 추정한다.

1. 고객 측면(조직 외부): 고객만족, 서비스 수준, 서비스 범위
2. 프로세스 측면(조직 내부): 재무(비용), 생산성, 업무품질

② 기술이 구현되기 어렵거나 업무에서 수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등을 충분히 경제성 분석에 반영해야 한다.

제32조(기타 재정사업의 편의) ① 기타 재정사업의 경우 건설사업의 예비 타당성조사와 달리 사업의 편익을 금전적인 형태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비용편익 분석이 아닌 비용효과성 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

②비용효과성 분석을 수행할 때, 어떤 정책수단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개별 정책수단의 효과성, 정부와 민간의 비용부담,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3절 비용의 추정

제1관 비용추정의 기본방향 및 비목별 총사업비 산정원칙

제33조(비용추정의 기본방향) ①초기 투자비인 총사업비와 완공이후 투입되는 유지관리비 및 운영비 등 필요한 모든 비용을 가능한 가장 현실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주) (총사업비) 이 지침에서 총사업비라 함은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 제6조에 따른다.

②건설사업과 정보화사업의 총사업비의 산정은 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 제6조에 맞추어 산정하여야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타 재정사업의 경우에도 총사업비가 중복적으로 계상되어 과다한 비용이 산정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은 이 지침 또는 각 부문별 세부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비용을 추정하는 경우 과거 유사사례, 국내외 공공기관의 자료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사업의 타당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용의 추가로 인해 소관부처와 중요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실무조정 위원회를 통해 해당 비용의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예시) 유사 사업 또는 과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반영되지 않은 비용을 반영함에 따라 B/C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제34조(총사업비의 검토) ①수행기관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상 총사업비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하며, 대안 또는 시나리오를 설정한 경우에는 대안 또는 시나리오에 대한 총사업비 검토결과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②총사업비 검토안은 사업계획서의 규모를 준용하되, 설계오류 수정 및 적정 단가 등을 적용하여 검토한다.

③대안의 총사업비 검토는 제시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최적화된 시설규모 및 사업비를 검토한다.

제35조(비목별 총사업비 산정원칙) ①공사비라 함은 총사업비 중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를 제외한 일체의 경비로서 총사업비관리지침 제61조에 따른다.

②공사비는 사업유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산출 가능한 수준에서 주요 공종별로 물량과 단가를 구하여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물 신축사업 등과 같이 공종별 물량집계가 어렵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사업의 사례,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의 단가, 전문 업체의 자문 등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③용지보상비는 용지구입비와 지장물보상비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는 사업대상지 실사를 통한 엄밀한 보상비 추정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조사시점에서 확인이 가능한 선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적용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1. (감정평가에 의한 방법) 감정평가 자료를 사용하며, 필요한 경우 표본 감정 적용을 통해 추정한다.
2. (주변 보상사례 가격 활용) 보상전례가 있을 경우 이 보상자료를 분석하여 해당 지역에 적용할 보상배율을 추출하여 전체 용지보상비를 산정한다.
3. (보상배율 적용방법) 공시지가에 [별표 1]의 지역별·지목별 보상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사업현장 여건에 따라 지장물보상비를 추가하여 전체 용지보상비를 산정한다.

④시설부대경비는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구성되며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공사비에 대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요율을 적용하여 각각 산출한다.

⑤ 예비비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용으로 부가세가 포함된 공사비와 보상비 및 시설부대경비 합계의 10%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단계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36조(운영비) 시설 및 장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 및 사업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비를 추정한다.

1. 토지·건물·설비·장비 등의 고정자산 기능을 유지하고 생애주기비용 (Life Cycle Cost)을 고려한 운영비를 산정한다.
2. 단순 이전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제37조(기타 비용) 수행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분석기간 중 발생하는 재투자비, 잔존가치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재투자비는 시설물별·장비별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초기 투자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반영한다.
2. 잔존가치는 용지구입비와 재투자된 시설물·장비의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잔존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3. 총사업비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추가적인 소요가 예측되는 비용은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제2관 교통시설 사업

제38조(도로사업의 비용추정) ① 도로부문 사업의 비용은 크게 총사업비와 유지관리비로 구분되며, 총사업비는 다시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용지보상비 및 예비비로 구분되며,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산출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초자료조사(현황조사 및 현지 조사)를 수행하고, 관련 계획 및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다.
2. 노선계획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보완한다.
3. 사업계획의 공종별 표준단면도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보완한다.

4. 사업계획의 공종별 수량 및 단위 공사비 산출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보완하여 공종별 공사비를 추정한다.
5. 추정된 공사비를 바탕으로 설계비, 감리비 등 필요한 시설부대경비를 추정한다.
6.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상비 항목을 설정하고 비용을 추정한다.
7. 추정된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보상비를 바탕으로 예비비를 추정한다.

②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도로사업 비용추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로·철도부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에 따른다.

제39조(철도사업의 비용추정) ①철도부문 사업의 비용은 크게 총사업비와 운영비로 구분되며, 총사업비는 다시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용지보상비, 차량구입비 및 예비비로 구분되며,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산출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초자료조사(현황조사 및 현지 조사)를 수행하고, 관련 계획 및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다.
2. 노선계획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보완한다.
3. 사업계획의 공종별 표준단면도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보완한다.
4. 사업계획의 공종별 수량 및 단위 공사비 산출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보완하여 공종별 공사비를 추정한다.
5. 추정된 공사비를 바탕으로 설계비, 감리비 등 필요한 시설부대경비를 추정한다.
6.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상비 항목을 설정하고 비용을 추정한다.
7. 열차운영계획에 따라 차량구입비를 추정한다.
8. 추정된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보상비를 바탕으로 예비비를 추정한다.

②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철도사업 비용추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로·철도부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에 따른다.

제40조(항만사업의 비용추정) ①항만사업의 총사업비는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보상비, 운영설비비, 예비비 등의 항목으로 구분되며,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산출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초자료조사(현황조사 및 현지조사)를 수행하고, 관련 계획 및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다.
2. 사업계획의 평면배치계획 및 공종별 표준단면도를 검토하여 시설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보완한다.
3. 사업계획의 공종별 수량 및 단위 공사비 산출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보완하여 공종별 공사비를 추정한다. 추정된 공사비를 바탕으로 설계비, 감리비 등 필요한 시설부대경비를 추정한다.
4.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상비(어업권 보상비 등 포함) 항목을 설정하고 비용을 추정한다.
5. 사업계획에 제시된 하역장비 설치비 등 운영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한다.
6. 추정된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보상비, 운영설비비를 바탕으로 예비비를 추정한다.

②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항만사업 비용추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항만부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에 따른다.

제41조(공항사업의 비용추정) ①공항사업의 총사업비는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용지보상비, 장비·차량구입비, 예비비 등의 항목으로 구분되며,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산출한다.

1. 국내선 전용공항은 국내 기준(항공법,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비행장 시설설계 매뉴얼 등)에 부합하도록 설계하며, 국제공항의 경우 각 국제 기준을 비교 검토하여 적용한다.
2. 사업대상지의 부지조성, 활주로의 신설 및 연장, 터미널 등의 신·증축, 기계시설, 전기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정보통신시설 등을 고려하여 공사비를 추정한다.

3. 장비·차량구입비는 공항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공항의 규모 및 운영계획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비용추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항부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에 따른다.

제3관 수자원 및 기타 사업

제42조(수자원사업의 비용추정) ①수자원사업의 비용은 크게 총사업비와 유지관리비로 구분되며, 총사업비는 다시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용지보상비, 및 예비비로 구분된다.

②수자원사업의 총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댐·하천·수도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1. 댐 사업비 추정은 댐 설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이용하여 구조물계획을 실시하고 가급적 세부 공종별로 산출한다.
2. 하천 사업비 추정은 하천설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이용하여 시설물 계획을 실시하고 가급적 세부 공종별로 산출한다.
3. 수도 사업비 추정은 상수도시설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이용하여 시설물 계획을 실시하고 가급적 세부 공종별로 산출한다.

③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자원사업 비용추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수자원부문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에 따른다.

제43조(건축사업의 비용추정) ①건축사업의 총사업비는 부지매입 및 조성비, 건축공사비, 부대비용, 기타투자비, 예비비 항목 등을 포함한다.

1. 부지매입 및 조성비에는 용지보상비 등 부지에 관련된 소요비용이 포함된다.
2. 건축공사비용은 시설 공사비와 주차장공사비, 부속시설 건축공사비를 포함한다.

3. 부대비용은 건축공사에 필요한 설계비용 및 감리비, 측량 및 지질조사비, 각종 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그에 따른 용역비 등이 포함된다.
4. 기타투자비용에는 건축을 위한 공사비 외 해당 시설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비와 집기비품비, 전산시스템 비용(정보화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음), 개원전 운영비, 유물구입비 등을 포함한다.

②건축사업의 운영비는 해당 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 운영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들을 포함한다. 단, 의료사업에서 의료진 인건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③건축사업의 총사업비나 운영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편익이 발생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한 경우 이를 추정하여 비용-편익분석에 반영한다.

주)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생산활동에 의한 부가가치를 편익으로 고려하는 경우 산업단지의 조성 운영비 외 상부시설 건축비 등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비용을 경제성비용에 반영한다.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비용추정) ①국가연구개발사업의 비용은 연구 개발비, 연구시설·장비 구축비, 연구관리비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바탕으로 추정하되, 단가는 유사사업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하며, 비용 추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에 따른다.

②연구개발사업의 총사업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편익이 발생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추정하여 비용-편익 분석에 반영 한다.

제45조(정보화사업의 비용추정) ① 정보화 부문의 총사업비는 시스템 구축비와 부대비, 운영 및 유지·보수비로 구분되며 비용항목 중 관련 기준 및 지침이 제정되어 있는 비용항목은 해당 기준에 따라 비용을 산정하되 별도의 기준이나 지침이 없는 비용항목은 다음 각 호의 지침에 참고하여 산정한다.

1.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 「SW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3.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
4.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5. 「정보시스템 관리기준」(행정자치부)
6.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행정자치부)
7.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②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비용은 벤더 지원여건, 부품의 평균 수명, 운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구매가격 대비 유지·보수비 비율로 산정한다.

③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율은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는 투입 공수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제46조(기타 재정사업의 비용추정) 기타 재정 사업의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정한다.

1. 기타 재정사업의 비용추계방법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하되, 추계에 사용되는 기본 자료는 기획재정부가 정부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기 재정전망 작업 등을 참고하여 통일한다.
2. 재정 추계시 사용되는 모수의 구체적인 값으로는 최근연도의 값을 활용하거나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라 장래의 값을 가정하여 시나리오 형태로 설정할 수 있다.
3. 재정추계 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여 결과의 강건성을 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4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제47조(경제적 타당성 평가의 전제) ① 경제적 타당성은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그로 인한 효과(편익)를 사회 전반의 관점에서 평가한다.

② 사업추진 전과 후(Before-After)가 아닌 사업의 시행과 미시행시 (With-Without)의 관점에서 사업추진에 의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다.

③ 편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분석하고, 비용이 반영되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편익을 반영하여 비용과 편익의 논리적 인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가시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암묵적인 비용 즉, 기회비용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미 발생하여 추가적인 편익창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매몰비용은 반영하지 않는다.

⑤ 세금 등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지출로 순수한 경제적 비용으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까지는 배제하고 분석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총사업비 가운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사업비를 경제적 비용으로 간주하여 경제성 분석의 비용으로 반영한다.

제48조(경제성 타당성 평가의 방법)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 평가는 기본적으로 비용-편익 분석기법(Cost-Benefit Analysis)을 이용한다. 다만 편익을 화폐가치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사업의 경우 등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비용-효과(Cost-Effectiveness) 분석 등의 대체 분석기법을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화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비용-편익 분석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의 특성상 화폐가치로 계량화된 편익을 추정하기 어렵거나 편익 추정이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비용-효과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2. (기타 재정사업) 사업 특성상 사업효과를 화폐가치화 할 수 있을 경우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비용-효과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3. 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총괄지침에서 제시되지 않은 방법론의 적용이 가능하다.

제49조(비용-편익 분석) 수행기관은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때 편익/비용 비율(Benefit Cost Ratio: B/C Ratio),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등의 지표를 구하여야 하며 각 지표가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B/C 비율)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편익/비용 비율이 1.0이상($B/C \geq 1.0$)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2. (순현재가치) 사업에 수반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연도의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제한값이며 순현재가치가 0이상($NPV \geq 0$)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3. (내부수익률)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로 환산된 값이 같아지는 할인율 R 을 구하는 방법으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내부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제50조(비용-효과 분석) 수행기관은 편익의 계량화 등의 문제로 비용-편익 분석이 어려울 경우 대체 분석기법으로서 비용-효과 비율(효과 한 단위 당 비용) 또는 효과-비용 비율(비용 한 단위 당 효과)을 측정하여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비용-효과분석을 시행할 수 있다.

예시 1) (비용-효과 비율) 청년 취업률을 1% 증가시키는 데 가장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대안을 선정

예시 2) (효과-비용 비율) 동일한 비용으로 청년 취업률을 가장 많이 증가 시킬 수 있는 대안을 선정

제51조(분석기준일 및 분석기간) ① 할인되는 분석의 기준일은 해당 사업의 분석이 착수된 전년도말로 하며 기타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 부득이 자료 구득의 한계 등으로 인해 수요·편익·비용 추정을 위해 적용한 수치의 기준연도가 경제성 분석을 위한 기준연도와 상이할 경우 이를 보정하여 경제성 분석을 수행한다.
- 비용 보정 지수는 건설투자 GDP Deflator(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Deflator 중 건설투자 항목), 편익 보정 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항목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보정 지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확히 서술하여야 한다.

② 경제성 분석기간은 사업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 도로·공항·항만·의료시설 부문 및 기타 대규모 건설사업은 사업 기간과 운영개시 후 30년을 합한 기간을 적용한다.
- 철도사업은 사업기간과 운영개시 후 40년을 합한 기간을 적용한다.
- 수자원사업은 사업기간과 운영개시 후 50년을 합한 기간을 적용하되, 광역상수도 사업 등 일부 사업은 해당 시설물의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 정보화사업은 기술의 발전 속도나 내구성 등에 의한 산출물의 수명이 짧고, 사업에 소요되는 장비의 유형과 내구연한이 다양한 정보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사업별로 적용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술분야에 따라 발전속도가 다른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의 특허 분석을 통해 산출되는 기술수명기간(Technology Cycle Time TCT)을 사업별로 편의 회임기간 이후부터 적용한다.
- 기타 재정사업은 중기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사업기간과 예상되는 사업 효과의 발생기간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적용한다.

③ 분석기간 동안 사업비의 연차별 지출비율은 각 부문별 세부지침에 따른다.

(예시) 고속도로사업의 경우

- 보상비 : 최초 2년간 각각 30%, 70%의 비율로 지출
- 공사비(공사기간 5년 가정시) : 매년 5%, 15%, 25%, 35%, 20%의 비율로 지출

제52조(사회적 할인율)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회적 할인율은 5.5%를 적용 한다. 다만 분석기간이 30년 이상인 철도와 수자원 사업은 운영 30년 동안은 5.5%를 적용하고 이후는 4.5%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제53조(민감도 분석) 수행기관은 경제성 분석 시 내재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비, 운영비, 교통수요, 할인율 등의 주요 변수가 일정량만큼 변화되었을 때 경제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절 민간투자 연계 가능성 검토

제54조(필수민자검토시설의 민자적격성 판단) ①수행기관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64조 제1항에 따른 필수민자검토 대상시설에 대하여 민자적격성 판단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 수준, 독립적 운영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사업,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형민간투자사업은 민자적격성 판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민자적격성 판단은 [별표 2]의 절차에 따라 정부실행대안과 민간투자 대안을 비교분석하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적격한지 여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제55조(민간투자가능성 검토) ①제54조 제1항에 따른 민자적격성 판단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 민간투자가능성 검토를 수행하며, 민간 투자가능성 검토는 종합판단에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AHP \geq 0.5$)에 대해 실시한다.

②민간투자가능성 검토를 수행할 경우에는 [별표 3]의 검토방법에 따라 (민간투자)법적 타당성, (민간투자)정책적 타당성, 민자가능유형 판단 순으로 항목별 검토를 수행한다.

제6절 재무성 분석

제56조(재무성 분석) ①재무성분석은 사회 전체의 입장이 아닌 개별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사업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현금유출)과 수입(현금유입)을 비교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사업 이후 지속적인 운영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업종료 이후 소요되는 유지·운영비용과 수입을 비교하는 재무성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재무성분석의 결과는 초기투자비용을 포함한 전기간 분석결과, 초기투자비용을 제외한 운영기간 분석결과, 국고지원금 고려 후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제57조(재무성 분석의 기준) ①재무성 분석에서 비용은 실제 투입가격을 적용하며, 세금·이자비용 등을 비용에 포함하여 분석한다. 또한 수입은 수요추정 결과와 사업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를 통해 추정한다.

②재무적 할인율은 시장이자율과 사업위험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하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5.5%를 실질 재무적 할인율로 사용한다.

③ 재무성분석에서의 분석 기준연도와 분석기간은 경제성분석과 같이 적용한다.

제58조(재무성 분석기법) 수행기관은 재무성 분석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현금흐름할인법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재무적 순현재가치 : 예상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가중평균자본 비용으로 할인한 값들의 합으로 재무적 순현재가치(FNPV)가 0보다 크면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2. 내부수익률 : 사업시행에 따라 기대되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로서 내부수익률이 자본비용보다 높을 경우 재무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3. 수익성지수 :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금유입의 현가를 현금유출의 현가로 나눈 비율로,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크면 재무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제 4 장 정책성 분석

제59조(정책성 분석체계) ①정책성 분석은 사업시행에 따른 비용 및 편의 증계량화가 곤란하지만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평가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②정책성 분석에 포함해야 할 평가항목은 평가내용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일반적으로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고용효과 분석 등 3개의 중분류 항목으로 범주화하여 평가구조를 설정한다. 다만 수행기관은 개별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특수 평가항목을 반영하는 등 정책성 분석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예시 1) 대규모 건설사업: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고용효과 분석 등

예시 2) 복지부문 사업: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및 여타 사업과의 중복성, 사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사업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전달 체계의 명확성과 적절성 등

예시 3)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정보화사업: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등

제60조(정책 일관성 및 추진의지 분석) 수행기관은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정책 일관성 및 추진의지를 고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련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사업의 준비정도를 검토해야 한다.

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수행기관은 관련분야의 상위계획에 해당 사업의 반영여부, 주무부처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2.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수행기관은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사업지역 및 주무부처의 사업에 대한 선호도와 추진의지를 검토해야 한다.
3. (사업의 준비정도) 수행기관은 해당 사업에 대한 계획의 구체성, 인력 및 재원 투입 방안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준비 정도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적인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하고 있거나, 사업계획이 구체화가 되어 있어 사업의 준비 정도가 평가의 큰 요인이 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준비정도'를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제61조(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분석) 수행기관은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위험요인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재원조달 가능성) 수행기관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충분히 제공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 여부, 사업주체가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기에 충분한 재정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민간 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다. 또한, 자체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 중 재무성 분석이 가능하고 분석의 실효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추진 및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과 재원조달 측면에서 발생가능한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무성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2. (환경성) 수행기관은 해당 사업의 수행으로 인한 영향을 개략적으로 평가하며, 사업수행 시 환경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이후 단계에서 환경문제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정보화사업의 위험요인) 수행기관은 재원조달 가능성, 중복성을 평가 해야 하고, 필요시 사업의 유형에 따라 환경성을 평가에 포함할 수 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위험요인) 수행기관은 재원조달 가능성과 법·제도적 위험요인을 검토한다.

5. (기타 재정사업의 위험요인) 수행기관은 재정부담 변동성, 외부효과 가능성, 관련사업과의 유사충복 가능성, 시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제62조(고용효과 분석) ①수행기관은 경제성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고용 효과를 고용유발효과와 고용의 질 개선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고용효과 창출이 사업의 주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고용효과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은 고용효과 분석시 세부 평가항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용유발효과: 건설기간 동안 재정 투입으로 인한 고용유발(취업유발) 효과 및 운영기간 동안의 직접고용효과 등 고려
2. 고용의 질 개선효과: 사업부문의 특성에 맞게 정성적 또는 정량적인 평가

예시 1) SOC 사업: '고용여건 및 고용 안정 평가항목'에 제한적으로 평가

예시 2) 기타재정사업: 사업의 주 목적이 사회보장일 경우 본 고용의 질 개선효과는 중복되어 평가하지 않음.

제63조(추가 평가 및 특수평가 항목) 수행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5조 제2항에 따른 정책성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환경적 가치의 고려가 필요한 사업 등 사업의 타당성 평가에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 평가항목 또는 특수평가 항목으로 분석에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 5 장 지역균형발전 및 기술성 분석

제64조(지역균형발전 분석항목) ①지역균형발전분석은 지역낙후도 지수에 의한 지역낙후도, 다지역산업연관모형(IRIO)에 의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기본적인 세부 평가항목으로 한다. 다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 평가항목을 반영할 수 있다.

② 해당 사업이 특정지역으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사업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제65조(지역낙후도 평가) 지역균형발전분석을 위한 지역낙후도는 「지역 낙후도 지수 및 순위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12. 4., KDI)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낙후도지수 산출방법 및 지역낙후도 지수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6조(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지역균형발전분석을 위한 지역경제파급 효과는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산량, 부가가치, 고용 등의 증가를 계량화한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한국은행에서 제시하는 지역 간산업연관표에 기초한 다지역산업연관모형(IRIO)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시행으로 인한 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현저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평가항목을 설정하여 종합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67조(기술성 분석) ① 수행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7조에 따른 기술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하여 기술성 분석을 실시한다.

1.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2.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3.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등

③ 정보화사업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하여 기술성 분석을 실시한다.

1. 업무요구 부합성
2. 적용기술 적합성
3. 구현·운영계획 적정성

제 6 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68조(종합평가의 방법) ①수행기관은 경제성분석, 정책성분석, 지역균형 발전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분석적 계층화법(AHP)을 이용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AHP평가자는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공공이익의 관점에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성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하며, 연구진, 예비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평가자 및 검토위원 등을 포함하여 10인 내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14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가 포함된 일반적인 예비타당성조사는 기본적으로 [별표 5]과 같은 AHP 계층구조를 따른다. 다만, 정보화부문 사업, 연구 개발부문사업, 기타재정 사업 등은 부문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층구조를 설정한다.

④평가기준 가중치 측정시 최상위계층인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및 지역 균형발전 분석의 가중치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8조 제2항에서 정한 가중치 범위를 적용한다.

⑤평가기준별 가중치와 각 기준에 대한 대안들의 평점을 곱해서 대안별 종합평점을 구한다. 대안별 종합평점 산정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부여한 평가자를 제외한 응답결과를 활용한다.

⑥AHP 분석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비일관성 비율이 0.15를 초과하는 경우 및 보고서의 분석 결과와 응답자의 평가내용이 상반되어 응답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 대해서는 '환류과정(feedback)'을 거칠 수 있다.

⑦사업 시행 대안의 종합평점이 사업 미시행 대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0.5 이상인 점수)에는 사업의 종합적인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 한다.

제69조(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은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종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조사결과 종합)경제성 분석 및 정책성 분석의 주요 내용과 AHP 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보여준다.
2. (정책제언)필요한 경우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및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 등을 정책제언으로 제시할 수 있다.

제 7 장 행정사항

제70조(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관리 · 감독)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과정에서 주기적인 점검회의 등을 통해 수행기관에게 분석의 세부내용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총괄지침, 부문별 세부지침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시를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1조(실무조정위원회 운영)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이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에 따른 재정 사업평가 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 조정할 수 있다.

제72조(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①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3. 경제성 분석 결과
4. 정책성 분석 결과
5. 지역균형발전(또는 기술성) 분석 결과
6. AHP 분석 결과
7.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②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가재정법 제38조의2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4조 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3조(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기획재정부장관은 수행기관이 지침을 위반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거나 조사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크게 해손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 제28조의1을 준용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장에게 관련자 제재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4조(지침 개정의 절차)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경제적인 여건의 변동, 관련 기준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해 지침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부처, 수행기관 및 해당 분야 전문연구기관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관련 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친 개정안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역별·지목별 보상배율

[별표 2] 재정추진사업의 민자적격성 판단

[별표 3] 예비타당성조사의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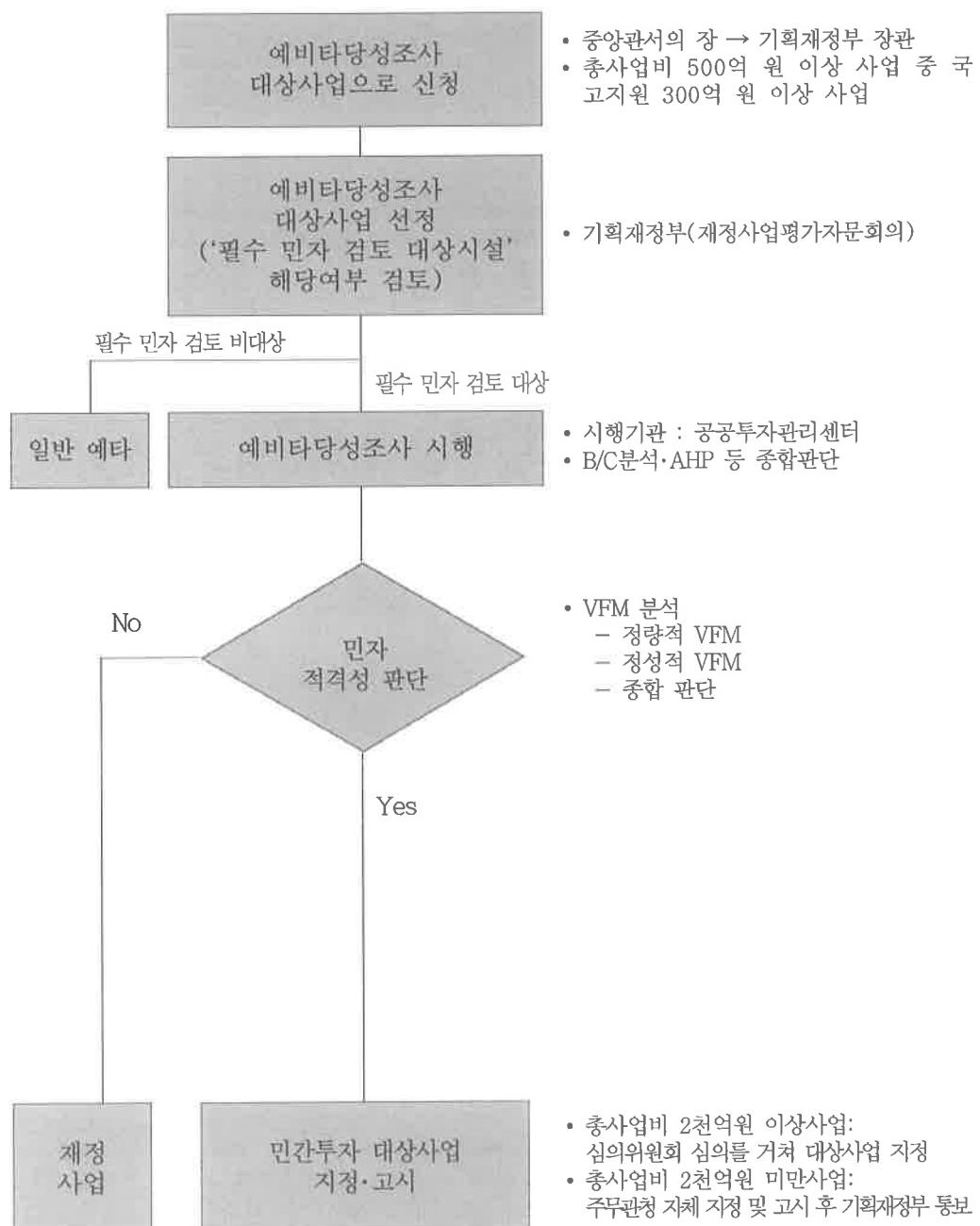
[별표 4] 정책적 분석항목의 구조 및 세부 평가항목

[별표 5]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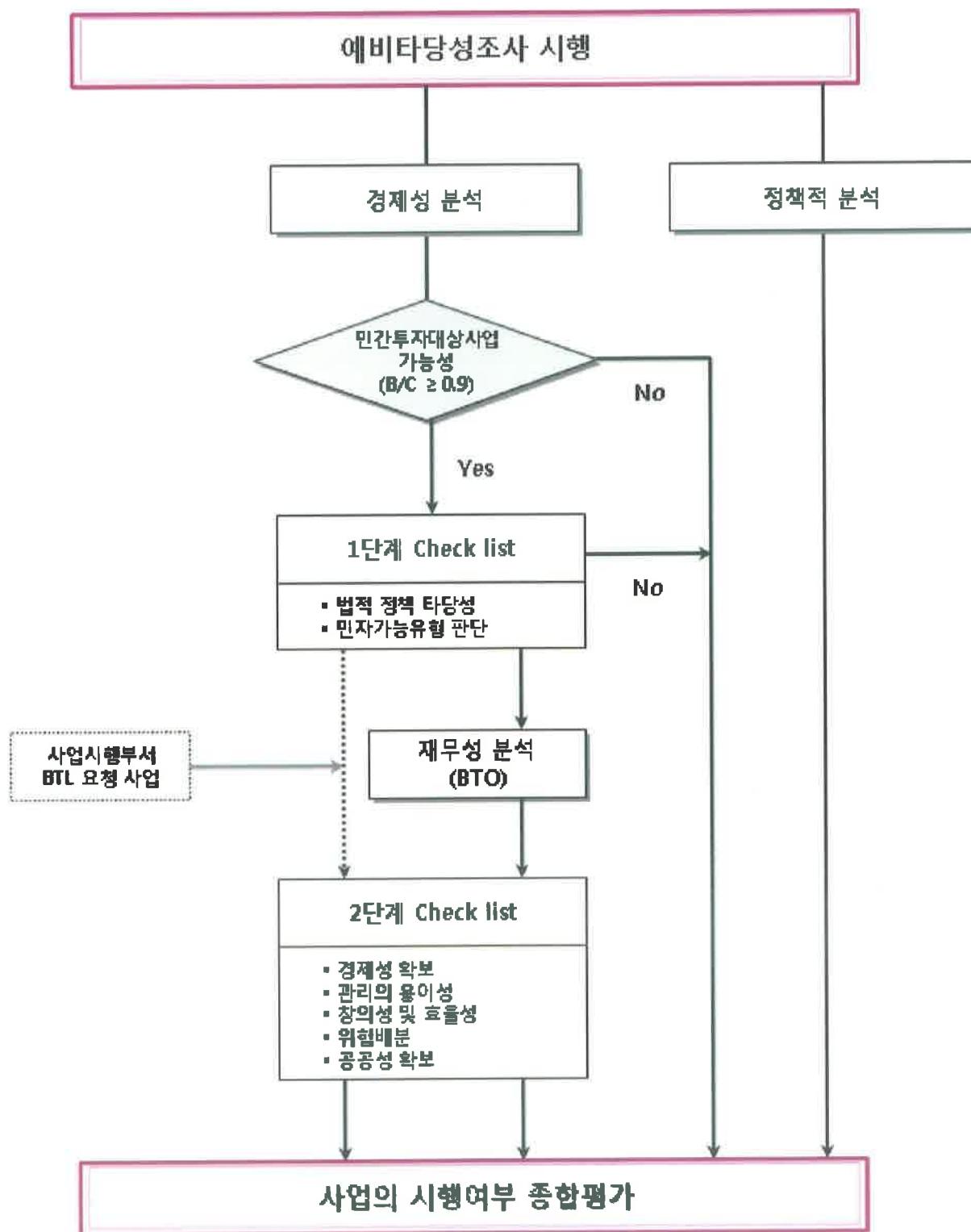
[별표 1] 지역별 · 지목별 보상배율(제35조제3항제3호 관련)

지 역	전	답	대 지	임 야
수도권	시 부	1.50	1.50	2.00
	군 부	1.75	1.75	2.50
수도권 외	시 부	1.75	1.75	2.30
	군 부	1.80	1.80	2.50

[별표 2] 재정추진사업의 민자적격성 판단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 3] 예비타당성조사의 민간투자 가능성 검토 체크리스트
수행 절차 (제55조제2항 관련)



[별표 4] 정책적 분석항목의 구조 및 세부 평가항목
(제59조제2항 관련)

종 분 류	세부 평가항목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사업의 준비 정도 추가 평가항목(선택적)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추가 평가항목(선택적)
사업특수 평가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 평가항목(선택적)

[별표 5]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구조(제68조제3항 관련)

